

June 2, 2026

2026년 5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6년 5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35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6. 5.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등으로 정하고,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하며,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은 4 년으로 하되, 기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8 년의 범위까지 연장	에너지
5. 26. (5.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및 4 차 이상 위반 시 300 만원을 부과	에너지

<p>5. 26. (6. 3.)</p>	<p>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1/2의 범위에서 감경하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과징금 금액을 1/2의 범위에서 가중 	<p>에너지</p>
<p>5. 12.</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실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정하고, 공개할 때에는 기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도구의 제한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 등의 포획허가승인 신청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신청서에 고유번호를 기재 	<p>자연</p>
<p>5. 12.</p>	<p>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가 기후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의 종류를 정비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관리·운용 방법을 은행에의 예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등으로 개정 	<p>화학</p>
<p>5. 12.</p>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기후부장관의 개선명령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p>화학</p>
<p>5. 12.</p>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방법·절차 등을 신설 	<p>화학</p>

5.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을 신설 	화학
5. 6. (5.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기후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 	화학
5. 6. (5.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적립률을 순보험료의 15 퍼센트로 정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으로 우선 총당해야 하는 경우를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손해를 14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와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에 관한 표현을 일치 	화학
5.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부과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작성·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에 대한 공표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계획 수립·변경 전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추가 	기후

5. 2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심사완료물질 79종을 신설하고, 후발등록, 변경등록 및 자료제출명령 회신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66종을 개정	화학 (화학 물질 안전원)
5. 2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 대표자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하고,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 및 신규 지정 시험기관은 추가	대기
5.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 한국환경보전원에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와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	화학
5. 20.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자연
5. 19.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 제 2 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년)의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폐합 예정임에 따라 「제 1 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계획기간('21~'30)에 맞추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물환경 목표기준을 설정	수질
5.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장 직무수행 시 권한대행 내용을 신설하고, 심의의결 방법에 전자적 심의도 가능하도록 문구를 반영	화학
5. 15.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 심사위원회 평가표의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고,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을 가점기준으로 신설하며, 각 항목별 가점은 1회만 인정하고, 지정 제외대상 요건을 추가	기타

5. 14.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기차 폐이차전지로 명칭 변경	폐기물
5. 14.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 유해성 낮고 활용가치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 IC 트레이는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수입자 자격을 완화	폐기물
5. 1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 IC-트레이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어 수입금지 품목 중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제한을 제외	폐기물
5. 1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신청 단계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우수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대기
5. 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 폐기물 미보관 휴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의무를 제외하고, 초과보관량 정의 및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시 조치 사항을 개정하며, 사업장폐기물 겹보기밀도 측정방법을 개정	폐기물
5. 13.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적·체계적 규정 신설을 통해 생물소재 관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정 제정	자연 (국립 생물 자원관)
5. 13.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의 시설 및 규모별 진단비용을 명시	수질
5. 13.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의 진단 대상 시설 및 시기, 범위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처리 기술진단의 법적 실시완료 기준을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로 일원화하며, 연간	수질

		기술진단 계획을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	
5.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자발적인 제품 성분 정보 제공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동일 신고번호 내 대표 및 모든 파생제품이 연장기준을 만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는 등 유효기간 연장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및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기준-절차를 개정	화학
5. 1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영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	화학
5. 8.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장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폐기물의 시료채취 대상인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대체원료 기준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5년 경과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적용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점검 횟수 차등화 및 서면점검 근거를 마련	공통
5. 7.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설로 기존 영업허가의 의무와 특례 사항 등을 준용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정하고,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제한물질이 허가신고 대상으로 이원화되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개정	화학
5. 7.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기준을 고시로 제정	화학 (국립 환경 과학원)

5. 6.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73 종에 대한 수량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5 종, 기존 유해화학물질 중 2 종에 대해 저확산 규정수량을 마련하며, 규정수량 적용방법 명확화 및 물질명을 수정 	화학 (화학 물질 안전원)
4. 30.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따라 경기 위축 및 에너지 가격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대형 사업 지원으로 용자지원 기준을 완화 	에너지
4.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배출량이 3,000tCO₂-eq 미만으로 감소 시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출효율이 우수한 배출량 잉여 업체와 재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할당이 가능하도록 하며, 추가할당 판단기준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대비 배출량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 4 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기후
4. 29.	(광역상수도 등 물값 심의위원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직위를 '물통합정책국장'에서 '제 1 차관'으로 변경하고, 기후부 위원을 국장급으로 상향하며,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인원을 20 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수질

2. 주요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24건)

예고 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내용	비고
'26. 5. 28. ~ 6. 5.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6. 7. 1. 시행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	기타
5. 27. ~ 6. 12.	상수원관리규칙	-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	수질
5. 27. ~ 7.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속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추가하고, 제조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은 90ppm 이하로 설정하며,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규정하고, 기존 허가·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	대기
5. 26. ~ 7. 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인 교체요청 조치 미이행, 감리인 시정·조치요청 등에 따른 감리인 변경 등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	화학
5. 26. ~ 7. 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를 신설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 및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을 개정	화학

5. 20. ~ 6. 29.	하천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을 규정 	수질
5. 20. ~ 6. 29.	하천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 	수질
5. 6. ~ 5. 1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 근거를 마련 	에너지
5. 6. ~ 6.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를 보수교육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고,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하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기
5. 28. ~ 6. 8.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자동차로 분류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 단일모드 측정방법 혹은 다중모드 측정방법에 따른 1 회충전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와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 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신설 	대기
5. 27. ~ 6. 15.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부분보강공법, 관로검사 방법,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 등 제시를 위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수질

5. 27. ~ 6. 15.	(하수도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하수도 인프라의 설계 강우빈도를 강화하고, 하수 역류, 하중 등으로 인한 맨홀 추락 방지시설의 이탈·파손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기준을 마련 	수질
5. 26. ~ 6. 16.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이 설치·운영하는 완충저류시설이 환경시설에 포함되어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에 맞추어 정비 	수질
5. 22. ~ 6. 1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 종에 대한 취급기준을 신설하고,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으로 일산화탄소를 추가 	화학
5. 22. ~ 6. 1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산지소형 분산특구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변전소 구역 내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유형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 지정 평가 시 재생에너지 활용 특구계획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에너지
5. 22. ~ 6. 1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전력을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구역전기 사업자인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어 중복 내용을 삭제 	에너지
5. 21. ~ 6. 9.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른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고시로 제정 	화학
5. 20. ~ 5. 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산업발전 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기관 명칭, 위탁 업무 내용 및 위탁 기간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5. 20. ~ 6. 1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에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	자연
5. 14. ~ 6. 4.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고시)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인증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인증기관 지정 및 단계별 심사체계 구성·운영 등 인증에 관하여 고시를 제정	기후
5. 13. ~ 6. 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26 년도 에너지바우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연탄 사용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	에너지
5. 8. ~ 5. 28.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칙)	- 기후에너지 기술의 전략 기획 투자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후부 제 2 차관을 의장으로 15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미래 핵심기술 발굴 및 투자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	에너지
5. 4. ~ 5.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및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위반부과금액 산정 기준을 추가	공통
4. 30. ~ 5. 19.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	-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의 출력별 구간을 5 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충전요금은 현행 전기요금,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변경	대기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25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26. 5. 20. (김태호의원 등 12명)	전기사업법	-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kWh 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에너지
5. 18. (민병덕의원 등 17명)	전기사업법	-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에너지
5. 15. (김미애의원 등 14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대기
5. 15. (조지연의원 등 12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	화학
5. 14. (박상웅의원 등 11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방식을 구체화	기후
5. 14. (윤준병의원 등 10명)	화학물질관리법	- 기후부장관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	화학

<p>5. 13. (조지연의원 등 13명)</p>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 	<p>화학</p>
<p>5. 13. (조지연의원 등 13명)</p>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 	<p>화학</p>
<p>5. 12. (곽상언의원 등 10명)</p>	<p>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 	<p>수질</p>
<p>5. 11. (문진석의원 등 10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 	<p>폐기물</p>
<p>5. 8. (구자근의원 등 13명)</p>	<p>전기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중 풍력 발전사업자는 설비가 기후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노후 풍력발전 설비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할 	<p>에너지</p>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에게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	
5. 4. (천하람의원 등 14명)	소음·진동관리법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	대기
4. 30. (박정의원 등 22명)	전기사업법	-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 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시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	에너지
4. 30. (박정의원 등 22명)	한국전력공사법	-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에너지
4. 30. (박정의원 등 10명)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되도록 의무화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	기후

<p>4. 30. (김태선의원 등 12명)</p>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 	<p>에너지</p>
<p>4. 30. (우재준의원 등 11명)</p>	<p>물환경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 	<p>수질</p>
<p>4. 30. (이만희의원 등 10명)</p>	<p>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이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벌금액을 상향 	<p>자연</p>
<p>4. 29. (이만희의원 등 12명)</p>	<p>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 	<p>자연</p>
<p>4. 29. (이학영의원 등 10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 	<p>폐기물</p>
<p>4. 29. (이정문의원 등 14명)</p>	<p>집단에너지 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 	<p>에너지</p>

4. 28. (위성곤의원 등 1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 범위를 국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확대 및 구체화	기후
4. 28. (이종배의원 등 11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 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	에너지
4. 28. (이종배의원 등 11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	에너지
4. 28. (박해철의원 등 10명)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	기후

II. 자원순환 순환경제 주요 계획 및 제도 소개

1.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

1) 추진 배경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4. 28.)
 -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유 및 나프타 수급이 불안
 -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7.8백만톤→1천만톤)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원천감량 1백만톤, 재생원료 2백만톤)
 - 불필요한 플라스틱 원천 감량,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연료로 신재 대체

2) 플라스틱 순환경제 주요 내용

- 불필요한 플라스틱 원천 감량
 -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
 - 플라스틱 제품 반복 사용, 재활용 등 평가, 종이 등 대체재 전환 유도
 - 배달용기는 경량화 유도, 택배포장제도 과대포장 제한
 -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
 - 재활용 어렵거나 저해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제한
 - 전기전자제품 등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하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구체화
 - 플라스틱 신재 투입 최소화
 - 일회용품 등은 부담금 요율 차등화, 재생원료 사용시 부담금 감면
- 재활용 산업 기반 구축 및 순환 이용
 -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 대체
 - 재생원료 의무화 10%인 페트병은 2030년 목표율 30%까지 강화
 - PE, PP 등 식품·화장품 등 품목도 국제수준에 준한 목표율 설정 예정
 - 단순 소각되던 플라스틱까지 순환 이용
 - 폐 경찰복, 군복 등은 재생 폴리에스터 추출, 충전·보온재 사용
 -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해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 종량제봉투 파봉하여 폐플라스틱까지 촘촘히 회수, 폐비닐 등은 광역 단위 수거체계 구축,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 활성화
 - 역동적 재생원료 시장 조성
 -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등 인증제 도입, 재생원료 제품 구매 확대
 -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
 - 대규모 연구개발(2540억원) 투자로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 기술 혁신

-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 축소
 - 일회용은 다회용으로 전환
 - 공공 장례식장 시설부터 다회용기 전환, 민간 시설 단계적 확대
 -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카페 등 다회용기 문화 정착
 - 탈플라스틱 선도 문화 확산
 -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리 정보 제공 시스템 등 협력체계 구축
 -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전 분야 확대

2. 자원순환 관련 제도 추진

1)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 입법절차 추진

-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
 -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
 - 에코디자인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올해 법률 초안 마련 예정
-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
 -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이 규정을 준수
 -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 필요
- 국내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규정
 - 기업들은 품목별로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활용 저해 재질·구조 개선
 - 재생원료는 일정 비율 이상 사용
 -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을 준수
 -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 표시(DPP*)

* DPP(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 환경성적표지와 에코디자인 제도 차이
 - 에코디자인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
 - 환경성적표지는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제도
 - 에코디자인 제도의 환경성능 및 정보표시 기준은 법적 기준 성격
- 정부 에코디자인 포럼 운영계획(4월~)
 - 국외 제품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및 법률안 초안 마련
 - 제도화 포럼과 품목별 포럼(5종)으로 구성
 - (제도화 포럼) 법률안 초안 작성 및 기준설정 표준지침 개발
 - (품목별 포럼) EU 동향 파악, 제조·재활용 기술동향 공유(5월~)

2)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 EU는 지속가능성 기준 요구하는 법률(PPWR*, Reg 2025/351 등) 발효, 시행 준비 중
 -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26. 8월~)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 EU 내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는 PPWR 주요 내용
 - 모든 플라스틱 식품용 용기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강화
 - 재활용, 재가공 관리 기준 강화
 - 반복 사용 제품에 대한 표시 등 소비자 안내 의무 신설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표면층에 대한 위해노출 평가시 실제 사용조건을 반영하도록 적용 및 검증 규칙의 정합성 재고
 - 중금속-PFAS 제한('26. 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30~) 등
- 올해 시행되는 EU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
 -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 강화
 -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 관리
 -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3. 순환경제 규제특례 추진

1) 자원순환 분야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추진

-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소개
 -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도입
 -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을 관계기관에 일괄 확인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연계)
 -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에 앞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유예 (2년+2년)
 -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관련 임시허가 승인
 - 환경·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제도 무력화하지 않도록 승인 조건 부여
- 현재 8개 분야 6개 부처가 개별 운영 중, 기후부는 순환경제분야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례 부여
 - 기업이 신청하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bottom-up)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top-down) 병행
 -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 실증특례 부여
- 최근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샌드박스 부여(4. 30.)
 -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 심사 위주

2) 규제 특례과제 주요 내용(12건)

- 기획형 과제(5건)

과제명	과제 주요 내용
사업장 폐합성 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폐합성수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5% 이내 - (실증내용) 사업장 배출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 순환자원 인정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 확보 <p>※ 투입 폐기물의 PE/PP 함량, 염수·수분 수치, 생산 제품의 성분 검사 결과를 검증하여 별도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p>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고형연료제품(SRF)은 허가 받은 발전시설, 산업용 보일러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실증내용)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p>※ 반입하는 고형연료제품 성상 및 열분해유 생산량, 성분 등을 확인하여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 검토</p>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열분해 잔재물에 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어 매립 처분 중 - (실증내용) 열분해 잔재물의 다양한 재활용 유형 실증 <p>※ 다양한 잔재물 재활용 유형을 검증하여 폐기물 분류코드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검증</p>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e-라벨)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화학제품안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총 23개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직접 한글로 표시 - (실증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23개 항목 중 필수 10개 항목만 제품 겉면·포장지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QR 코드(e-라벨)로 제공 <p>※ 포장 폐기물 감량 및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p>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가죽, 화장품 소재 등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식물성잔재물을 소재 및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유형 부재 - (실증내용) 사과무 가공부산물을 건조·분쇄 후 배합하여 가죽을 제조하고, 버섯 폐배지에 함유된 유용성분을 추출·가공하여 화장품 소재로 재활용

● 기업 개별 신청 과제(7건)

과제명	과제 주요 내용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 방문형 멸균·분쇄 위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의료폐기물은 소각방식 처리 외에 위탁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 (실증내용) 차량에 탑재한 이동형 멸균·분쇄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설비 실증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의료폐기물은 소각방식 처리 외에 위탁처리를 미 허용 - (실증내용) 멸균분쇄시설 자가 설치가 어려운 중소형 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탁 서비스 제공
식물성 잔재물 및 농업부산물 기반 바이오 고형연료의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실증 및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으나 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 사용시설을 제한 - (실증내용) 식물성 잔재물(땅콩껍질, 참깨박 등)을 재활용 공정을 통해 목재 펠릿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생활연료제품을 제조
느타리버섯 수확후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갈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버섯 폐배지는 재활용 용도가 비료, 사료 등으로 한정 - (실증내용) 버섯 수확 후 발생하는 배지를 활용하여, 축사용 깔개, 버섯 배지 원료로 제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 보조원료 혼입이 곤란하며, 고체연료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이 제한 - (실증내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위한 고체연료 품질기준 완화 및 고체연료 연소재의 재활용 실증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유형 제한 - (실증내용)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콘크리트 강화제로의 재활용성 실증
기업 재고·폐현수막 자원순환형 업사이클 패널 제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폐섬유, 폐의류 등 활용하여 제품 제조시 재활용업 허가 필요 - (실증내용) 폐섬유, 폐의류, 폐현수막 등 섬유자원을 물리적 공정을 통해 패널 및 건축·시설용 자재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

III. 기후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6. 5. 29.	고위공무원 정은해	기후에너지정책실 국제협력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 위원장
5. 15.	부이사관 김대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	고위공무원 승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장
5. 4.	김성진	-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3년)
	과학기술서기관 김용운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원근무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5. 1.	수석전문관 이형섭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기관 임국현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부이사관 양광석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부이사관 고대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지원근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범수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부이사관 고 현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부이사관 윤정원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서기관 최재웅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서기관 이현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서기관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수석전문관 서민아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유재영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5. 1.	서기관 강부영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서기관 오영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서기관 지용상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서기관 정혜윤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서기관 김양희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과학기술서기관 김금임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시설연구관 원유승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서기관 안지애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환경연구관 강대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장
	환경연구관 홍석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대기환경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장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구도형

변호사

T 02.3404.0857

E dohyung.koo@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